

인가번호 제 호

사내(공동)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

1. 기금법인 명칭:
2. 주사무소 소재지:
3. 대표자 성명:
4. 대표자 생년월일: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52조제4항·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직인